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6
----------	-------

제출년월일 : 2017.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의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
(안 제19조의2)

나.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부칙 안 제3조)

- 종전 2017.12.31. ⇒ 변경 2019.12.3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7. 4. 27. ~ 5. 17.(제출의견 없음)

나.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 동의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7. 5. 23.)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사.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세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9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